

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

제정 2009.04.30
개정 2009.08.21
개정 2012.01.20
개정 2012.05.31
개정 2014.04.29.
개정 2016.00.00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각종 자문, 심사, 평가 등 회의 수당 및 특별강연, 세미나 등 강사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범위) 이 내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사회운영규정 제19조에 규정한 비상임이사와 감사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
2. <삭제 14.4.29>
3. 재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초청된 공무원, 외부전문가, 실무자, 고객 등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
4. 재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소양 및 직무교육, 채용시험, 신규사원연수, 워크숍, 세미나 등에 초청된 강사, 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및 심사, 감독수당
5. <삭제 12.5.31>
6. 각종 회의 자료의 사전심사수당 (신설 12.5.31)

제3조(지급방법) ①회의참석수당은 매 회의 개최 시 마다 일당액으로 지급한다.

②강사료 지급은 매 강좌마다 시간당액으로 지급한다.

③ <삭제 12.5.31>

④사전심사수당은 심사대상 회의자료의 사전 심사 시마다 심사 대상자료의 양과 난이도에 따라 지급한다.(신설 12.5.31)

제4조(지급액) ①회의참석수당 및 사전심사수당, 강사료 등의 지급기준액은 별표1과 같다. (개정 14.4.29)

②서면평가 및 서면회의 개최 시 수당 지급은 평가 및 심의, 의결을 요하는 등 중요사항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.

< 별표 1 > (개정 16.00.00)

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

구 분	단위	단가	지급 기준	비 고
이사회 참석수당	-	300,000	당해 회의 참석자	사안이 경미할 경우 감액 또 는 미지급
실무위원회 참석수당	-	70,000		
고객 참석수당	-	50,000		
자문회의 및 평가,감독의 참석수당	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본료 : 100,000원 ◦ 초 과 : 5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단 직원 및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▶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▶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	
사전심사 수당	회당	A급 1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· 자료의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 · 검토자료의 분량이 A4기준 100page 이상 	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		B급 1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심사평가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· 자료의 사전 검토 등 준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경우 · 검토자료의 분량이 A4기준 50page 이상 	"
		C급 7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심사평가 및 자료검토, 감독 등이 대체적으로 평이한 경우 · 검토자료의 분량이 A4기준 50page 미만 	"
사이버 위원회 참석수당	일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본료 : 50,000원 ◦ 초 과 : 2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단 직원 및 공무원,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▶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▶ 단순히 E-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수당만 지급 	

※ 예외적 규정 :

1. 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등에서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.

강사로 지급기준

등 급	대 상	지 급 액	
		최초1시간	초과시간
특별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·현직 장관(급) • 전·현직 대학총장(급) • 전·현직 국회의원 • 전·현직 광역자치단체장 • 대기업 총수(회장) • 국영기업체 사장 	400,000	300,000
특별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·현직 차관(급) • 전·현직 기초자치단체장 	300,000	200,000
일반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• 전·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•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, 언론인 •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• 기업·기관단체의 임원, 중역 • 판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• 전·현직 3급 이상 공무원 •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·현직 4·5급 공무원 • 컨설턴트(석사학위이상 소지자) •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	250,000	120,000
일반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• 전·현직 4·5급 공무원 • 중소기업체 임원급 • 기업·기관단체의 부장급 • 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•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• 원어민 어학 강사 •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	130,000	80,000
일반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 •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	80,000	50,000
일반4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	70,000	40,000
일반5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 	50,000	30,000

- ※ 세미나, 심포지엄, 패널토의 기초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
- ※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대표이사가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- ※ 맞춤형 현지방문 교육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- ※ 퍼실리테이터(FT) 강사수당은 최초 2시간까지는 일반강사 조건으로 지급하고, 3시간 이후부터는 초과 매시간 단가의 80%를 적용하여 지급